

회칙

부산

부산 아마츄어 무선 클럽
BUSAN Amateur Radio Club

[B.A.R.C.]

amateur

생각해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본회의 명칭은 부산 아마추어 무선클럽이라 칭하고 B.A.R.C.
(Busan Amateur Radio Club)라 약칭한다.
- 제 2 조 : 본회는 정당한 아마추어 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 지도 하고
무선 통신 분야의 기술향상과, 이의 보급 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 제 3 조 :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선 통신에 관한 출판물 간행
 2. 서울 연맹과 QSL의 증계 전송
 3. 무선 통신에 관한 강습회, 견학회, 연구 발표회 개최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제 4 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한다.
1. 특별 회원
 2. 정 회원
- 제 5 조 : 특별 회원은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국한 자와 개국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
- 제 6 조 : 정 회원은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 (이하 KARL 이라 약칭한다)
에 가입 한 자로서 부산에 거주하는 자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 제 7 조 : 회원을 탈퇴고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끝마쳐야 하며
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는 제명한다.
- 제 8 조 : 회원은 본회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9 조 : 회원으로서 본회의 또는 KARL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본회의
사업 및 그 목적을 지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KARL과 협의 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고문

- 제 10 조 : 본회는 고문을 둔다, 고문은 본회의 특별 회원 중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 한다.
- 제 11 조 :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 12 조 :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이사 : 7명 이내



제13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제14조: 회장이 위고시는 이사중의 한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부담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궐선거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기 완료후 후임자가 취임할때 또는 전임자가 계속 직무한다.

제19조: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때 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해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제21조: 정기총회년 매년 1회에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제적회원 $\frac{1}{4}$ 이상 동의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이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제적회원 $\frac{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총회는 제적회원수의 $\frac{1}{3}$ 이상의 출석과 다수결의로서 행하고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안
2. 세입, 세출의 예산의 결의와 결산의 승인
3. 제정상의 긴급 처분안과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4. 회무보고와 계획
5. 임원선거와 개정안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 5 장 제정과 회계

제25조: 본회의 기금과 일반경비는 월정회비 및 본회 사업과 제정에 관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전조의 기금과 일반경비 부담액은 이사회에서 사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7조: 본회의 입회금은 가입당시 납부하며, 월정회비는 매3개월 단위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찬조금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일반인사에 의한 찬조금으로 한다.

제29조: 회계 연도는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 까지로 하며 회비의 수입결산을 연도결과와 동시에 회무상적과 더불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30조: 본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본규약은 본회 설립 즉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